

## 질의회신

오정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지방세 관련 질의회신 사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조사없이 판단한 지방세 관계법령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지방세 부과·징수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 Q 질의내용

가. 상가주택을 취득하면서 주택 유상거래 감면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주택분과 상가분으로 취득가격을 분리한 후 주택분에 과다하게 치중하여 취득신고를 한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나.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인가되어 1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가 모두 이주한 단전·단수 및 출입문 폐쇄상태 등의 물건에 대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유상거래 감면에서 제외하였으나, 수개월 후에 시행인가가 취소되었다면 당초 취득시기로 소급하여 주택 유상거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승인취소 이후의 취득물건이 주택 유상거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A 회신내용

가. 상가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구분하여 취득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각각의 시가 표준액과 신고가액을 비교한 후 높은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되, 주택부분에 대해서



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증된 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야 할 것임

나. 과세물건의 취득 당시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을 위해 인가를 받은 후 세대원이 이주하고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의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외형적으로 주택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곧 철거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사용가치를 상실하고 새로이 건축되는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분양권으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유상거래 감면대상으로서의 “주택”으로 볼 수는 없으며, 조합해산 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되고 단전·단수가 해지되는 등 주택 기능이 회복되었다면 인가취소 후 취득하는 물건은 유상거래 감면대상인 “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임

【지방세운영과-4724, 2011.10.7.】

## 2. 승계취득 체비지 취득세 면제대상 여부

### Q 질의내용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공동시행자로 지정한 건설사가 공사비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사실관계

- '04. 6. 16. :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 인가
- '04. 10. . :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 '05. 9. 1. : 조합과 A건설사\* 및 B건설사\*\*를 공동시행자로 지정  
\* 당해 공사 수행, \* \* A건설사의 연대보증업무 수행
- '06. 3. 24.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 '07. 12. :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 지정 인가
- '12. 3. 23. : 당해 도시개발사업 준공(예정)  
- 조합이 사업비 충당을 목적으로 체비지를 원시취득

- 공동시행자이면서 시공사인 A건설사가 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공사비 대가로 승계취득(소유권이전)할 예정임

**A**회신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에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 제5항에서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체비지는 「도시개발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사업시행자가 원시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할 것이나 이후 사업시행자(조합)로부터 매수(소유권이전)하는 경우는 승계취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승계취득에 대한 경우에는 별도의 면제규정이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승계취득자가 공동시행자이거나 공사비 대가로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체비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

【지방세운영과-4733, 2011.10.10.】

### 3.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 학교기업에 해당 여부



### Q 질의내용

학교법인이 소재하는 도 지역을 벗어나 영업신고한 학교기업이 사용하는 건축물을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인 학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 A 회신내용

가. 舊지방세법(법률 제10416호, 2010.12.27 개정 이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인 학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산업교육을 하는 학교를 산업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제36조 제1항에서 산업교육기관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서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교사시설 안 또는 같은 규정 제5조에 따른 교지 안으로 하되,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교육기관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 안에 한하여 교사시설 및 교지 밖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설치한 학교기업에 직접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이라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구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855, 2005.5.24 해석 참조)이나, 당해 학교기업이 소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른 지역범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으로 볼 수가 없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

【지방세운영과-4732, 2011.10.10.】

#### 4.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구조지수

##### Q 질의내용

건물의 구조가 철골조이면서 벽면이 조립식 패널, 유리 등 혼합되어 있는 경우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에 대한 판단 여부

##### ※ 사실관계

- 현행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철골조 건물의 구조지수는 100. 다만, 철골조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가 조립식패널인 경우는 60, 시멘트블럭은 70, 내부마감공사가 된 경우 80을 적용

##### A 회신내용

- 가. 같은 철골조로 지어진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물 벽면이 조립식패널이나 시멘트블럭인 경우 콘크리트 등 다른 구성물질로 되어 있을 때 보다 내구성·강도·사용성 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낮아 일반 철골조 구조물보다 구조지수를 하향하여 적용하여야 함
- 나. 건물구조는 주된 재료와 기둥 등에 의하여 분류하고 있으므로,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 역시 벽면을 구성하는 주된 재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다. 여기서 주된 재료라 함은, 건축물 벽면 전체 면적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재료를 주된 구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 사실관계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임

【지방세운영과-4749, 2011.10.10.】

#### 5.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 Q 질의내용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 인 토지에 대해 농지의 전용신고를 하여 일부면적에는 감귤저장고를 신축하고 나머지 면적에는 과수를 식재한 경우에 해당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

## A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및 제102조에서는 건축허가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를,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사실상 농지 등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각각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대법원 ‘11.5.13. 선고 2008두14074 판결 참조)을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허가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농지의 범위는 「농지법」에서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10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이면서 사실상 경작을 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지목이 과수원인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과세기준일 현재(6.1)에 감귤저장고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따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라. 또한,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목이 과수원인 토지에 농지전용 신고만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에 “사실상 경작”에 사용한다면 「지방세법」 제102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임

【지방세운영과-4870, 2011.10.18.】

## 6. 대한결핵협회의 임대부동산 재산세 감면 여부

Q 질의내용

대한결핵협회가 보유한 부동산을 보건산업진흥원에 유상임대한 경우에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A 회신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함) 제2조에서 “고유업무”란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0조에서는 「결핵예방법」에 따른 대한결핵협회(이하 “결핵협회”라 함)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지특법 제40조 규정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공익법인의 세제지원·육성을 위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해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인지의 판단기준이 되는 “고유업무”의 범위는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정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속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결핵협회는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법인등기부등본에는 결핵에 관한 진료사업 및 부동산(기본재산)에 대한 임대수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였으나, 「결핵예방법」과 결핵협회 「정관」 제3조 및 제4조에는 결핵의 진료, 예방교육, 연구사업만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수입”은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록 등기부상 “임대수입”을 등재하였더라도 이를 결핵협회의 “고유업무”로 보기는 어려움

다. 또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실제사용관계, 법인의 목적, 고유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 '06.1.13 선고 2004두9265 판결참조)으로 결핵협회는 결핵예방·치료에 관한 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해당 부동산을 과세기준일(6.1.) 현재 주된 고유업무인 결핵사업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유상임대를 통해 타인이 해당 부동산을 직접점유·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결핵협회가 임대수익을 취하는 것을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에는 곤란함

라. 이를 종합해 볼 때, 법인등기부 등본상 “임대수입”은 결핵협회의 자원확보를 위한 수입원의 하나로서 정한 것일 뿐, 개별법령과 정관에서 그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당해 임대한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임

【지방세운영과-4869, 2011.10.18.】

## 7. 토지취득 이후 지급한 건설자금이자의 신축 건축물 과세표준 포함 여부

### Q 질의내용

토지 취득을 위한 대출금 이자가 토지취득 이후에도 발생한 경우 신축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A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는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 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건설자금에 총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따라서 토지취득을 위한 은행 대출금을 토지취득에 사용하였고 이 대출금을 다시 건축공사대금으로 사용한 명백한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토지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다만,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임

【지방세운영과-4925, 2011.10.20.】

## 8.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중복감면 배제 범위



Q 질의내용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연금공단” 이라 함)의 공무원 임대주택 감면 적용에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 이라 함) 제24조(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및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등 2개 이상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복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A 회신내용

- 가. 「지특법」 제24조 제2항에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공단이 같은 법 제16조 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1조에서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하여취득세·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같은 법 제96조에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나. 「지특법」 제24조 제2항의 연금공단에 대한 감면은 공무원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감면인 반면 같은 법 제31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제도는 서민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감면인 바, 임대사업자의 범위에 연금공단이 포함된다면 연금공단은 상기 두 개의 규정 모두에 해당할 수 있음
- 다. 다만, 「지특법」 제96조에서 동일과세대상에 대해 두 개 이상의 감면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두 개 이상의 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을 방지하면서 과다한 조세지원을 조절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조세감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대법원 1996.10.11. 선고96누1337 판결 참조)으로 연금공단의 동일과세대상(임대주택)에 대해 두 개의 감면조문을 모두 적용(두개의 조문을 중복 적용하여 유리한 세목을 선택)하는 것은 「지특법」 제96조의 입법취지 및 조세공평성에 배치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함
- 라. 또한 중복감면 배제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지특법」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감면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조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연금공단에 대한 감면규정(제24조)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 마. 따라서 조세감면 등 특혜규정은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납세자에 유리하다 하여 조세감면규정을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두11372, '09.8.20, 대



법원 2005두15021, '07.7.12 등 판결 참조) 동일과세대상에 대해 둘 이상의 감면조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특법」 제96조의 중복감면 배제원칙에 따라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의 조항만을 적용하는 것” (행정자치부 지방세정-1431호, '03.10.8 참조)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 및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임

【지방세운영과-4924, 2011.10.20.】

## 9. 분납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취득시기

### Q 질의내용

국가 등이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임대주택(이하 “분납임대주택” 이라고 함)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부취득으로 보아 분양전환금 납부시기를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A 회신내용

가. 연부취득이라 함은 과세대상 물건이 존재하면서 계약상 매매대금의 지급이 2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취득으로서, 연부취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내용에 의해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97누3170 1998.11.27. 참조)

나.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분납임대주택의 공급이 임대차계약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긴 하나, 10년의 임대기간에 걸쳐 약 4년 단위로 초기분납금, 중간분납금, 최종분납금이 분할 지급되는 바, 이는 실질적으로 1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주택가격을 분납하는 연부취득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 분납금 납부시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됨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임

【지방세운영과-4923, 2011.10.20.】

## 10. 신탁재산 이전 관련 취득세 적용 세율

### Q 질의내용

시공사가 위탁자의 채무를 변제하고 그 대가로 수익권을 승계받은 후 본인명의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으로 보아 1천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 A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일반적인 유상승계취득과 달리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신탁은 혈연관계에 의한 상속취득과 같이 신탁설정자와 신탁인수자간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반하기 때문에 해당유형들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지방세심사-96, 2004.4.26. 참조)

나. 시공사가 당초 수익자인 위탁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그 대가로 수익권을 승계 받은 후 신탁재산을 본인명의로 취득하는 것은 신탁에 따른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반하여 취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일반적인 유상승계취득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임

【지방세운영과-4722, 2011.10.20.】

## 11. 수직으로 연결된 출자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 Q 질의내용

① A법인이 B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B법인은 C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던 중, A법인이 소유한 D법인의 주식 100%를 C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②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A법인이 소유한 D법인 주식 100%를 B법인에게 양도하고 1년 후 B법인이 소유한 D법인 주식 100%를 다시 C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 A 회신내용

- 가. A법인이 B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B법인은 C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상태라면 A법인과 B법인, B법인과 C법인은 각각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A법인과 C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 나. 따라서 질의①과 같이 A법인이 소유한 D법인의 주식 100%를 C법인에게 양도하였다면 C법인이 D법인의 주식을 새롭게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 다. 질의②와 같이 A법인이 소유한 D법인 주식 100%를 B법인에게 양도하고 1년 후 B법인이 D법인 주식 100%를 C법인에게 다시 양도하였다면, 각각 과점주주 내부의 주식이동에 해당하고 지분의 증가가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다만,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임

【지방세운영과-4921, 2011.10.20.】 